

2024년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정사항 안내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변경된 운영방침 안내 드립니다.

- 배점기준 강화** (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내용_제5~6조 항목 및 별표2)
 - * 수료기준: **각 차시별 진도 20% + 시험(평가) 80% = 70점 이상** 시 수료
 - * **각 차시 모두 학습진도 + 시험(평가) 응시 후 7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가 됩니다.**
(예시, 3차시 과정일 경우, 1~3차시 모두 7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)
- 평가방식 변경** (안전보건교육 제5~6조_별표2)
 - 개정 前: 학습진도 80% 이상 진행 후 총괄평가 응시
 - 개정 後: **각 차시별 학습완료 후 시험 응시** (각 차시별 3문제씩 출제)
(강의실의 자료실에 [강의교안] 제공)
- 차시당 영상강의는 1시간 이상**으로 구현. (안전보건교육 규정 제5조 1항 및 별표1)
 - *기존 영상: 아나운서의 설명으로 영상이 구성
 - *개정 영상: **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영상**으로 구성
- 교육기간 변경**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)
 - *기존: 분기별(3개월) 교육
 - *변경: **반기별(6개월 즉, 상/하반기) 교육**
(와이즈에서는 반기/ 분기 교육 모두 가능합니다.)
[예시]

구분	개정 전 분기별 교육	개정 후 상.하반기/분기교육
1분기	1월~3월	1월~3월
2분기	4월~6월	4월~6월
3분기	7월~9월	7월~9월
4분기	10월~12월	10월~12월
상반기	-	상반기(1월~6월)
하반기	-	하반기(7월~12월)

- 차시별 평가 응시에 따른 재응시 규정 변경**(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)
 - * 차시별 시험에서 미수료한 경우, **3회까지 응시가능.**
단, 3회 응시 후 점수미달 시 **재학습을 한 후 3회 추가로 재응시가 가능** 합니다.

- 차시별 시험응시 예시화면

04	근골격계 질환과 뇌·심혈관질환 예방과 관리	Y	2023.12.26 16:01	2023.12.26 16:01	1/1	학습하기	결과보기(0회)
05	안전의식과 휴먼 에러	Y	2023.12.26 16:02	2023.12.26 16:02	1/1	학습하기	시험응시(0회)

*위와 같이 각 차시별 학습 완료 시 시험응시 버튼이 보여짐.

- 3회 응시 후 평가점수가 미달되면, 해당 차시의 학습이력이 리셋되어 재학습을 완료해야 다시 시험응시 버튼이 생성됨.

01	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 표지의 이해	Y	2023.12.26 19:23	2023.12.26 19:24	1/1	학습하기	시험응시(2회)
02	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업무상 재해	N			0/1	학습하기	

↓

01	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 표지의 이해	N	2023.12.26 19:23	2023.12.26 19:24	1/1	학습하기	
02	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업무상 재해	N			0/1	-	

*예시와 같이 1차시 시험응시를 2회까지 하였으나 평가점수 미달로 3회차 응시를 해야하는 경우입니다. 마지막 남은 3회까지 응시를 했음에도 평가점수미달이 되면 학습이력이 리셋되어 재학습을 해야 하며, 시험응시 버튼은 재학습 후 생성됩니다. (재학습 후 추가로 응시기회 3회가 주어집니다)

▣ 최종점수 및 성적확인

학습기간 중: 나의 강의실 → 강의실 → 수강중인 과정 → 강의실 버튼 클릭 후 성적표에서 확인 합니다.

홈	목적	시험	과제	성적표	자료실	공지사항	FAQ	1:1상담	학습지원프로그램
---	----	----	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	-----	-------	----------

성적보기

수료확정예정일	2024.02.18	최종수료여부	학습중
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	-----

상세내역

차시	학습진도	평가(시험)	취득점수	수료여부
01차시	100점	100.0점	100점	Y
02차시	100점	100.0점	100점	Y
03차시	90점	50.0점	60점	N

※ 각 차시별 수료기준: 학습진도 20% + 평가(시험) 80% = 합산 70점 이상 시 수료
 전체 차시 모두 학습진도 + 시험(평가) 응시 후 7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
 (예시, 3차시 과정일 경우, 1~3차시 모두 7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)

학습기간 종료 후: 나의 강의실 → 수강완료과정에서 수료여부 및 성적 확인이 가능합니다.

나의 강의실

수강완료 과정

강의실 >							
수강중인 과정							
수강신청중인 과정							
수강완료 과정							
나의 정보 >							
회원정보수정							
비밀번호변경							

총 2개							*교육연도: 2023 ▾
번호	과정구분	과정명	복습기간	수료	수료종	강의실	
2	이러닝	안전 Master_근로자 정기교육_상반기(사무직) (6h)	2023-12-01 ~ 2024-12-25	수료	교육실시확인서	복습하기	
1	이러닝	안전 Master_근로자 정기교육_상반기(사무직) (6h)	2023-12-02 ~ 2024-12-25	미수료	미수료	복습하기	

<< < 1 > >>

*복습하기를 클릭하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.

<<안전보건교육 규정 개정내용>>

제5조(인터넷 원격교육) 근로자 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(60분)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%(30분) 이상을 확보할 것
2.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

【별표 2】(개정 2023. 2. 21.)

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(제5조 및 제6조 관련)

1. 인터넷 원격교육과 우편통신교육의 기준

8)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.

9)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%, 학습진도율평가 20%로 하여 총 득점의 70%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. 다만,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%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10) 과목별 학습을 마친 후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. 다만, 시험에서 불합격한 교육생이 해당 과목의 과목별 교육시간을 90% 이상 재학습한 경우 시험을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.

11) 9)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은 학습평가 대신 학습평가와 과제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과제평가의 배점 기준은 20% 이하로 하여야 한다.

12) 11)에 따라 과제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기관은 제출된 과제물을 첨삭하여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첨삭 결과를 교육생모듈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3-10호, 2023. 2. 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의2제3항제2호마목, 제5조제1호, 제7조, 별표 2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(개정 2023.2.21.)

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(제3조의2, 제10조, 제15조 관련)

1.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
2. 사업주, 법인의 대표자,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
3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.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.
4.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.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
 - 가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,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- 나.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- 다.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(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,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)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(임상심리사,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·학위 취득자)
- 라. 「의료법」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
 - 아. 「공인노무사법」 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
 - 바.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
- 사.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- 아.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(게이트키퍼)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 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